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
3호 안건

※ 동 자료는 3.25(화) 14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적극적 기업 지원을 위한

공급망안정화기금

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

2025. 3. 25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Ⅰ. ‘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현황 ····· 1

Ⅱ. ‘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방향 ····· 2

Ⅲ. 공급망안정화법 개정 추진 ····· 4

Ⅰ. `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현황

1.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

□ 공급망안정화법 시행('24.6월)에 따라 **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** 구성 및 '24년 운용계획 의결('24.9월)

○ '24.9월 **기금운용심의회**는 국회(2인), 정부(기재부, 외교부, 산업부 1인), 수은(1인) 추천 인사 **등으로 구성**(총 7인)

○ 제1회 공급망 기금운용심의회('24.9월)는 **기금운용 관련 규정, 리스크관리 방안, 기금운용계획 등 의결**

2. 선도사업자 선정

□ '24년 중 **두 차례**에 걸쳐 **10개 부처** 소관 경제안보 **품목 66개/서비스 2개** 항목에 **99개*** **기업 선정**

* **대기업 25개, 중견기업 30개, 중소기업 42개**, 공공기관 1개, 협동조합 1개

○ 선정된 **선도사업자**는 **공급망기금 중점 지원 대상**으로 **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**(0.8~1.0%p 인하) **적용**

3.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현황

□ **(기금 규모)** 국회의 '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**국가보증 동의안 의결**에 따라 **총 5조원 규모로 기금 출범**

□ **(기금 지원) 대출 중심**으로 지원하면서 **간접투자**도 **병행**

○ **(대출) 21개 기업에게 2조 119억원 승인**

○ **(투자) 공급망안정화기금 1천억원**과 **수은 공동출자**를 통해 **1조원*** 규모 **특화 사모펀드** 조성('24.12월 승인 → '25년 상반기 결성)

* **(규모) 1조원** = **공급망안정화기금 1천억원** + 수은 1천억원 + 민간출자 8천억원

Ⅱ. `25년 기금운용 방향

1. 기본방향

□ 기금지원 규모를 **확대**함과 동시에 **지원대상 및 지원수단을 다각화**하여 **공급망 안정화 기업 적극 지원**

○ **최대 10조원*** 내에서 **선도사업자** 중심으로 지원하되, **관계부처·공급망안정화위원회·기금운용심의회**가 **인정**하는 사업도 지원

* '25년도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(10조원) 국회 본회의 의결('24.12.26자)

○ **대출·보증 외, 직·간접 투자** 등 지원수단 다각화

2. 중점 추진과제

①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지원

□ 전기차 캐즘(chasm),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**공급망 핵심산업**의 **국내 생산·구매 지원**

○ **(지원 대상)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·부품 등**을 **국내에서 조달**하는 **국내 제조기업**

> **▌지원기업 예시 ▐**
> ① 이차전지 소재(분리막), 원료(전해액)를 구입하는 **이차전지 기업** 또는 원료(반도체 특수가스)를 구입하는 **반도체 기업**
> ② 중간재(NCM 전구체)를 구입하는 **양극재 기업**

○ **(지원 내용)** 국산 제품의 **구매자금** 및 **운영자금**에 대하여 기금의 **자금 조달원가 수준**으로 금융지원 → **'25년 1조원** 지원 목표

② 경제안보 서비스분야로 지원 범위 확대(해운 물류)

□ '25년에는 **경제안보품목**의 안정적인 **도입·생산·유통망** 강화를 위해 **해운물류** 및 **기반시설 확보 등**으로 지원 범위 확대

○ **(지원 분야)** 기존 품목 위주에서 경제안보 서비스로 확대하고, **경제안보 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**부터 우선 지원

○ **(지원 대상)** 경제안보품목관련 **운송 선박확보, MRO사업*** **등 우선 지원하되, 점진적 범위 확대**(주요국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)

* 원활한 운항을 위한 유지보수(Maintenance)·수리(Repair)·운영(Operation)

③ 「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」을 통한 기금지원 사각지대 해소

□ **기금대출**과 **신·기보 보증**을 **연계**하는 '**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**('25.1.23 신설)'을 통해 **중소·영세기업**의 **여신 확대** 및 **금융비용 경감**

○ **(대상)** ① **선도 사업자**, ② 선도사업자 안정화사업의 **협력기업**, ③ **기금운용심의회**에서 **인정**하는 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기업

○ **(규모)** '25년 **최대 2천억원** → '26년부터 **보증규모 확대** 추진

- 대상 기업에게는 **보증 + 추가 금리우대**를 통해 **금융비용 경감**

④ 기금사업 투자 · 분석역량 강화

□ **(투자 역량)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 신설**(수은, '25.7월)을 통해 **핵심광물 확보** 등을 위한 **직·간접 투자 적극 추진**

○ 민관협력 기반의 **핵심광물 투자 촉진**을 위해, **'핵심광물 투자협의회*'**를 통해 **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 추진**

* 제1차 **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** 개최('25.2.18, 기재·산업·외교부, 수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 등 참여)

□ **(분석 역량)** 수은내 **'공급망분석팀'을 신설**('25.1월)하여 연구·분석 기능을 강화하고, **'기금 투자자문단*' 운영**을 통해 **창의적 지원 수단 개발**

* 수은 내·외부 투자전문가(수은 내 투자 담당자, PE 운용 인력 등)로 구성

Ⅲ. 공급망안정화법 개정 추진

1 **수출입은행**이 **공급망안정화기금**에 출연할 수 있도록 **법적 근거** 마련

○ **(배경) 現 기금**은 **기금채권**을 **발행**하여 재원 조달(추후 상환 필요)
→ 기금 구조상 **고위험 투자** 및 **적극적 대출금리 지원** 등 **한계**

○ **(활용) 수은 출연금**을 재원으로 **직·간접 투자, 주요사업 초저리 대출** 등을 통해 **기금지원**의 **실효성 제고**

2 **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**에 대한 **면책 규정** 도입

○ **고의** 또는 **중대한 과실**이 없는 **기금지원**에 대하여 그 **책임**을 **면제***함으로써 **고위험 사업**에 대한 **적극적 지원 기반** 마련

* '**기간산업안정기금**'의 경우 산업은행법(제41조)에 **면책조항** 기 도입

3 **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**(現 5년) 을 **5년 범위**에서 **연장**

○ **기금지원·재원확보**의 **불확실성 해소** 및 기금채권의 **시장 경쟁력 확보**를 위해 기금의 **조성기간 제한** 완화